

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성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2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1월 10일
발 의 자: 박성연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경훈, 김규남,
김동욱, 김용일, 김원태,
김춘곤, 문성호, 박영한,
박철성, 서준오, 송경택,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
이민석, 이은림, 이종태,
최민규, 최유희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-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대한 상생협약 이행 여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, 상가임차인 권리보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대하여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대하여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장기안심상가 조성 등) ① ~ ③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6조(장기안심상가 조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시장은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대하여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